

의안번호	2216039
의 퇴 인	정준호의원
회 답 일	2026.4.6.
추 계 번호	26B0160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3항 (사업)	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·융자·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<u>제1항제3호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조·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. 이 경우 일반 철도차량 제작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음(제3항)</u>	재량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9조제3항 (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공사가 철도차량의 제조·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일반 철도차량 제작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현행법 제4조¹⁾는 공사의 자본금은 22조로 하고, 그 전부를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른 자회사 설립 또는 철도차량 제작 관련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신규 투자가 필요한 경우, 정부의 추가 출자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
 - 또한 제12조²⁾는 국가가 철도차량 및 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가 별도의 보조 및 융자 등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현재 공사가 개정안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지 관련 회사를 인수할지 여부, 자회사의 규모 및 사업범위, 재원조달 방식 등이 불확정적이며, 정부의 출자, 보조 등 재정투입 여부 및 그 규모 등은 공사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화 될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제4조(자본금 및 출자)

-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,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③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「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2) 제12조(보조금 등)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·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.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